C - 16 - 2016

<그림 5-1> 벽 미장 바름 순서

- (2) 미장작업시 작업발판은 작업높이에 따라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변 의 벽돌, 페인트통 등 불안정한 발판의 사용을 금지한다.
- (3) 고소부위 미장작업을 위하여 강관비계, 이동식비계 등의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KOSHA CODE C-28-2011(이동식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) 및 KOSHA CODE C-30-2011(강관비계 설치및 사용안전지침)에 따른다.
- (4) 작업발판 단부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KOSHA GUIDE C-08-2015(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지침)에 따른다.
- (5) 작업발판 위에 재료를 적치하여야 할 경우는 폭이 최소한 60cm 이상이어야 한다.
- (6) 계단실 등 통로부위 미장공사를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수평재는 돌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돌출부위에는 보호캡을 설치하여 충돌을 방지하다.
- (7) 고소부위 미장작업 시 작업공구, 미장재료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고 하부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통행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8) 계단실 등 경사부위 미장공사를 위하여 작업발판을 경사로 설치할 경우 근로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고용 노동부 고시 2012-92호(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)에 따른다.
- (9) 작업발판 위로 못, 철선 등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6. 바닥 미장공사 중 안전조치 사항

- 6.1 타설 전 안전조치 사항
 - (1) 작업 장소 및 위치를 확인하고 바닥미장 장비의 운반 및 작업에 장해요인을 파악 후 장비 운반방법 및 이동통로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